#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0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황정아 · 위성곤 · 강준현

복기왕 • 이재관 • 김성회

조승래 • 박지원 • 박희승

황명선 · 장종태 · 민형배

윤건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중소기업은 20%p,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10%p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1)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3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1)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35"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45"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하며, 같은 목 2)나)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100분의 8"을 "100분의 18"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u>2024년 12월</u>	<u>2027년 12월</u>
<u>31일</u> 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	31일
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	
나만을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	1
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	
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신	
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 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경우: 100분의 3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 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생 략)
-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 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

7
1)
<u>100분의 50</u>
2)100분의
30
<u>50</u>
<u>100분의 35</u> -
 나. (현행과 같음)
2
<b>△.</b>

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 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 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 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 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 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 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경우: 100분의 4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30

나.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 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가
가 1)
1)
1) <u>100분의 60</u>
1) <u>100분의 60</u> 2) <u>100분의</u>
1) <u>100분의 60</u> 2) <u>100분의</u> <u>40</u>
1) <u>100분의 60</u> 2) <u>100분의</u> <u>40</u> 나. (현행과 같음)
1) <u>100분의 60</u> 2) <u>100분의</u> <u>40</u> 나. (현행과 같음) 3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곱하여계산한 금액1)중소기업인 경우: 100분

기·
/r
100분의 35
<u>100분의 50</u>
<u>100</u> 분
<u>의 70</u>
나
1)
1) <u>100</u>

의 25

② ~ ⑥ (생 략)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 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 의 8 4) (생략)

분의 45
<u>2</u> )
가)
<u>100분의 25</u>
나)
<u>100분의 20</u>
3)
<u>100분</u>
의 18
4)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2